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08
----------	------

2021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27일 이영실 의원의 9명
2.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영실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규 민간위탁을 통해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과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시설이 시설 유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등 관련 규정이 동일한 바, 시설 유형에 맞춰 민간위탁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임.

#### 2 주요사항 검토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규정 정비(안제19조)

- 현재 광역단위인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않고, 상위법에 따라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사회복지시설<sup>1)</sup>에 맞춰 개정(안제19조제3항 및 제4항<sup>2)</sup>)하고, 현행 조례의 센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

터 지정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p>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u>설치·운영 및 지정</u>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1</p>	<p>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 ----- ----- --- <u>설치·운영</u>----- ---</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p>

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p><u>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u></p> <p><u>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u>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u></p>	<p><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u></p> <p><u>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u></p> <p><u>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	--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민간위탁 사항 분리 규정(안제19조)**

-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항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만을 관련 사항만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달리, 현행 조례에 설치·운

영 근거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은 현행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 ----- ----- --- 설치·운영---</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 외국인주민 가족 지원사항 (안 제7조제1항 신설)

- 개정조례안(안 제7조제1항)은 각 호로 규정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사항) 중 외국인주민이 아닌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결혼 이민자가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문체계에 맞게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u>결혼이민자</u> 등의 보호·지원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u>외국인주민</u> ----- -----

###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규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음.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광역단체 중 서울시만 설치·운영 중이다 보니 가족복지전달체계로서 자치구센터나 중앙센터와 가족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 바, 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운영 예정인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센터들과의 협력체계와 소통 구조를 충분히 마련하여 광역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0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이영실,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용석, 김제리,  
김혜련, 김화숙, 박기재,  
조상호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규 민간 위탁을 통해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나.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 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과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결혼이민자”를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를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설치·운영 및 지정”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u>결혼이민자</u> 등의 보호·지원</p> <p>9. ~ 11.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8조(<u>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u>)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u>설치</u>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7조(지원의 범위) ①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 <u>외국인주민</u> ----- -----</p> <p>9. ~ 1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u>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u>) ① ----- ----- ----- ----- ---- <u>설치·운영</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  
-----  
-----  
---- 설치·운영-----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삭 제>

② 시장은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

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생 략)

-----.

<삭 제>

<삭 제>

제25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문서번호	2021052500000004
------	------------------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05.25	
회신일 : 2021.05.26	내용문의 : 02-2180-7942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지원의 범위)제1항제8호에서 결혼이민자를 외국인주민으로 개정함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의 현황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안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서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서는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안 제20조(업무의 위탁)을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과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이정수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